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 관련 규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해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배포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 유용행위를 예방**하는 중요한 **질차적 의무**이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술자료요구서 미교부 등 **법 위반 사례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 '22년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유용 등) 위반 사건(총 10건) 모두 기술자료요구서 미교부 행위 포함

아울러,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의 경우 '22년 **새롭게 도입**되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보호 관련 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은 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실무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해설**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현재까지 누적된 법 집행 사례(심결례·판례), 실제 민원회신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Q&A)**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 1 -

또한, 실제 활용 가능한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서식과 함께**,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작성 예시**도 소개하고 있다.

< 가이드라인 주요 목차 및 구성 >

| | |
|--------------|---|
| I. 개요 | 1.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성격 2.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 제도 개요 3. 적용 범위 / 1) 하도급거래 / 2) 기술자료 |
| II. 기술자료요구서 | 1.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 개요 2. 기술자료요구서 항목별 설명 3. 기술자료요구서 양식 및 작성 예시 |
| III. 비밀유지계약서 | 1.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의무 개요 2. 비밀유지계약서 항목별 설명 3.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양식 및 작성 예시 |
| IV. 질의응답 | 1. 기술자료 해당 여부 관련 2. 기술자료 제공 요구 관련 3. 기술자료요구서 관련 4. 비밀유지계약서 관련 5.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
| V. 주요 심결례 | 주요 심결례 |
| 「부록」 관련 법령 | 하도급법 · 시행령 및 기술유용행위 실사지침 |

단,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해설서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실제 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향후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기업설명회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배포하는 등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불임> 주요 질의응답 정리

<별첨>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 | | | |
|-------|--------------------|-----|---|
| 담당 부서 | 기업거래정책국 기술유용감시과 | 책임자 | 과장 고인혜 (044-200-4648) 담당자 김이영 (044-200-4650) 사무관 박대순 (044-200-4653) |
|-------|--------------------|-----|---|



Q1. 원사업자가 제조 방법 및 사양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자료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A1.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에는 원사업자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원사업자가 제공한 자료에 기초하여 기술자료가 작성되었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수급사업자의 기술 또는 노하우가 반영되었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2019누51675 판결, 대법 확정 2022두39178)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도면을 토대로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도면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Q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였고, 부품 제조 위탁에 따른 대가도 지급하였음. 그렇다면 부품의 제조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승인도는 원사업자의 소유가 아닌지?

A2. 부품 제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부품 제조 과정의 비법(노하우) 및 기술이 전달되어 있는 **승인도가 바로 원사업자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사업자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것이지, 수급사업자의 비법(노하우) 및 기술이 포함된 기술자료 자체를 이전받기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례(2022두39178)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도면의 제작을 위탁한 것이 아니라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것이고, 이 사건 도면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부품의 제조를 위해 스스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수급사업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Q3. 기술자료요구서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A3.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의 취지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를 벗어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스스로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수급사업자가 요구받은 기술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원사업자의 사용 목적, 권리귀속관계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인식하고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나 비밀 침해 행위에 적정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자료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2021누68874 판결).

따라서 기술자료의 구체적 범위, 원사업자의 사용 목적, 권리귀속 관계 등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없이 포함하면서 수급사업자가 항목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합니다.**

- 3 -

Q4. 동일한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만 제공해도 되는지?

A4. 기술자료요구서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별로 교부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수급사업자에게 동일한 목적으로 여러 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술자료 요구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별첨 자료 86쪽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IV.1.(5) <예시3> 참고)

다만, 이와 같이 통합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를 거쳐, 기술자료 내역, 각 기술자료의 요구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인도일 등 법령에 정한 기재사항을 누락없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비밀유지계약서 또한 법정 요건에 따라 세부 사항을 누락없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면 통합하여 하나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Q5.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개발과정에 참고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준 기술과는 큰 차이가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기술자료 사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A5. 판례(대법 2017다34981)는 기술자료를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등과 같이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기술자료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자료를 사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이르지 않더라도 **합의된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였다면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4 -